

중요 보호자 여러분께

2026년도 취학 원조에 공지

기타구교육위원회

취학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또한, 취학 지원 심사를 원하시는 분은 이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2 페이지"2 취학 지원 신청 절차"(1)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 년 학습 지원으로 인증 받은 분은 2026 년 회계연도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2025 년 회계연도 중에 부인하거나 연도 중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올해도 신청을 원하시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초기 신청 마감일 : 2026년 4월 30일 (목)

※ 위 기한 이후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취학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분

기타구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공립 초등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학교(전기과정), 특별지원학교(초등부, 중학부)의 아동 및 학생의 보호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1)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계신 분
- (2) 인정일에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분(아동수당과는 다릅니다)
- (3)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 모두의 총소득금액이 기준액 인정 기준액 (아래 참고) 미만인 분
- (4) 특별한 사정으로 원조를 희망하는 분으로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

※ DV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타구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 보호자와 혼인 관계가 있는 경우, 별거 중이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원으로 심사합니다.

(공적인 서면 등으로 이혼 조정 중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DV 등 지원 조치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특수 지원 학교의 경우, 도교도의 취학 장려 사업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서도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그 외에 도립 학교의 지원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도가 우선됩니다.

※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학생이 조치비를 지급받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나 도의 양부모 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정 기준액(기준)】이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학교의 후기 과정을 포함한다.

가구구성		가구모두의 연간수입액 (급여 수입자)	가구모두의 총소득금액 (2025.1.1~2025.12.31)
2인	부모(33세) 자녀(초1)	약 458 만엔	약 313 만엔
3인	부모(37세·32세) 자녀(초1)	약 501 만엔	약 347 만엔
4인	부모(40세·34세) 자녀(중1·초3)	약 597 만엔	약 424 만엔
5인	부모(50세·45세) 자녀(고2·중3·초4)	약 647 만엔	약 464 만엔
6인	부모(42세·35세) 자녀(중1·초3) 조부모(70세·65세)	약 692 만엔	약 503 만엔

※"총소득금액"이란,

- ① 급여소득만 있는 분들은,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란에서 10 만엔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② 사업 소득의 분은, 연간 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등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令和 年分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

支払元 会社 名	住所 支店 名	支払 金額	源泉 徴収 金額	控除 額	支払 済 金額
		「給与所得控除後の金額」から10万円を控除した金額			

2 취학 원조 신청 절차

확인해주세요

【신청이 필요한 분】

- 2025 회계연도중에,기타구에서 취학 원조를 신청하고 있지 않는 분
- 2025 회계연도 취학 지원이 "부인" 처리되었거나, 연도 중에 "인정 취소"가 된 경우
- 새로 기타구로 전입한 경우(기타구 외에서 취학 지원을 받고 있던 경우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새 초등학교 1 학년 부모 중, 3 월에 기타구에서 신입학 학용품비를 입학 전 지원 받지 않은 분
- 형제·자매 중 학업 지원을 받지 않는 아이가 있는 분

→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1)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필요 없는 분】

- 2025 회계연도 중에 기타구에서 취학 지원 인증을 받은 분
- 새 초등학교 1 학년 부모님 중, 3 월에 신입학 학용품비를 입학 전 지원받은 분

→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은 P.3의 플로우차트를 확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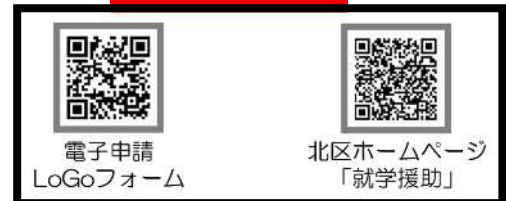
원칙적으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다만, 입금 계좌나 신청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신청 방법

전자신청을 권장합니다

- 전자 신청 (LoGo 양식) 또는 우편,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전자 신청은 오른쪽 QR 코드 또는 기타구 홈페이지에서 "취학 지원"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의 읽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기타구 홈페이지 URL 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URL : <https://www.city.kita.lg.jp/children-edu/schools/1003980/1003981.html>



- 우편 신청 방법은 기타구 홈페이지 "취학 지원"을 확인해 주세요.
- 전자 신청이나 우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확인 서류·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지참하시고 학교지원과 학사 담당 창구로 오시면 됩니다.학교에서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2026 년 4 월 30 일 (목)

※기한까지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4 월부터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기한이 지난 후에도 연도 중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도 중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가 대상이 됩니다.

(2)신청에 따른 소득의 확인에 관하여

① 2026 년 1 월 1 일현재 기타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

소득확인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2026 년분** (2025 년 1 월 1 일~2025 년 12 월 31 일) 의 소득의 신고(동일 가구에서 공제 대상 배우자·부양 친족 이외의 분 전원)을 실시해 주세요.

소득이 없었던 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구약서세무과에서 소득이 없던 신고를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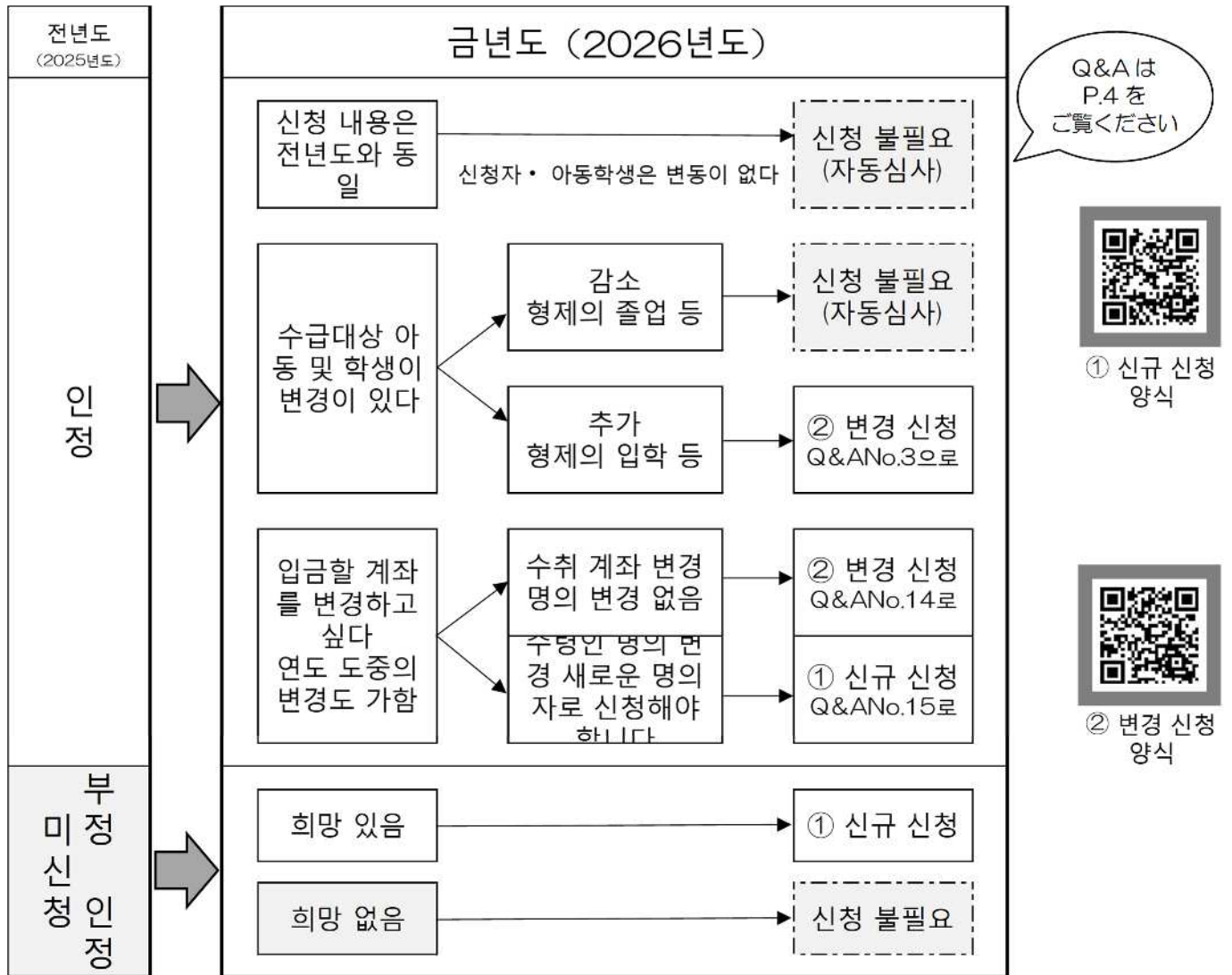
② 2026년 1월 1일 현재, 기타구이외 주민등록이 있는 분

“2025년도 시구청촌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025년 6월초부터, 1월 1일 현재 주소지 세무담당과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자에게는 추후 통지를 송부하겠습니다.

마이넘버 이용에 대하여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분으로 마이넘버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이넘버 이용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넘버이용동의서”는 기타구 홈페이지 “취학 원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우송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flowchart



3 인정 결과 및 지급에 대해

(1) 인정 결과는 6월 하순에 아동 학생 주민등록지 가구주 앞으로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또, 재적하는 학교에도 인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원조비의 지급은, 원칙으로서 기타구립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연 5회 지급일, 기타구립 이외의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연 1회 3월에 신청자의 지정 계좌에 입금합니다. 단, 학교 납부에 체납이 있는 경우는 직접 교장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초과로 부정인정이 된 경우에도 그 후에 가구상황이나 전년 중의 소득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이혼이나 소득 수정 등). 단, 인정된 경우의 원조비 지급은 재신청한 달부터입니다.

4 취학원조의 지급내용

지원 내용의 개요는 기타구 홈페이지 "취학 지원"의 "지원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받은 분께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지원 금액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5 기타

주된 생계 유지자의 생활 상황 급변 등(질병 치료, 회사 사정에 의한 실업, 파산, 재해 등) 특별한 사유로 전년도 소득 외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육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14-8546 도쿄도 기타구 다키노가와 2 초메 52 번 10 호

기타구 교육위원회사무국 교육진흥부 학교지원과학사계(기타구청 타키노가와 분청사 1 층 5 번 창구)

【Q&A】

	No.	질문	2026년도 인정결과	회답	
신청	1	지난 회계연도(2025회계연도)의 취학 지원을 신청했는지 확실하지 않다.인정결과를 모른다.		인증 상황은 전화 등으로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신규 신청 양식” 에서 신청해 주세요.	
	2	가구는 언제 기준의 가구 상황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전년도에 인증을 받은 분과 연초(4월)에 신청한 경우의 가구 상황은 원칙적으로,초등학교 입학식 다음 날(2026년 4월 9일)로 정합니다. 연도 중간에 신청한 경우의 가구 상황은 신청 시점으로 합니다.	
	3	큰 아이는 지난해(2025년도)의 취직 지원을 신청했다.4월에 입학한 밑 아이의 신청이 필요한가.	(2025년도) 인정	신입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입학 전 학용품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 신청 양식” 에서 수급 신청 아동 학생을 추가해 주세요.	
	4		(2025년도) 부인정	원하신다면, “신규 신청 양식” 에서 형제·자매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상황의 변경	5	가구원 전원이 기타구 내에서 이사했으며, 아이의 전학이 결정되었다.	인정	재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구내 전입으로 전학하는 경우, 전학한 학교에 교육위원회가 인증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6	주민표의 가구원이 감소했다. 예: 사회인인 큰 아이만이 기타구 외로 전출.	인정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매월 담당 부서에서 주민표와 학적 이동 정보를 확인하여 취학 지원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변동 등으로 인해 변동 후 가구 전체의 총소득금액이 인증 기준액을 넘을 경우,인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부인정	가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신규 신청 양식” 에서 다시 신청해 주세요. 또한, 가구원이 1명 감소하면 인정 기준액도 감액됩니다.	
	8	주민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늘었다. · 아이가 태어났다 · 기타구외 또는 기타구내의 다른 주소에서 가구원이 일부 전입했다. 예: 타현에서 조부모가 전입	인정	출생 시점이나 전년 12월 말 기준으로 16세(고등학교 2학년) 미만인 가구원이 전입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년 12월 말 기준으로 16세(고등학교 2학년) 이상 가구원이 전입한 경우,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 신청 양식” 에서 가구원을 추가해 주세요. 또한, 기타구 외에서 전입하는 경우,재신청 소득 심사 시, 2026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비과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변경 신청 양식” 에서 증명서 이미지도 함께 업로드해 주세요.	
	9		부인정	가구원이 1명 늘어나면 인증 기준액도 증가합니다.따라서 재신청을 하면 인증 결과가 부인 인증에서 정식 인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신규 신청 양식” 에서,재신청해 주세요. 다만, 인증된 경우 지원비 지급은 재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10	보호자가 결혼했다.	인정	원칙적으로 보호자는 가구에 포함시켜 심사를 진행하므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 신청 양식” 에서 가구원을 추가해 주세요. 또한, 새로 가족이 된 분이 기타구 외에서 전입하는 경우,재신청 소득 심사 시, 2026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비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변경 신청 양식” 에서 증명서 이미지도 함께 업로드해 주세요.	
	11		부인정	가구원이 1명 늘어나면 인증 기준액도 증가합니다.따라서 재신청을 하면 인증 결과가 부인 인증에서 정식 인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신규 신청 양식” 에서 다시 신청해 주세요.다만, 인증된 경우 지원비 지급은 재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12	보호자가 이혼했다.	인정	신청자(지원비 수령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양식” 에서 변경된 신청자 이름으로 다시 신청해 주세요. 신청자(지원금 수령자)가 변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가 필요할 경우(신청자의 성이 주민표상 변경된 경우 등)는 담당 과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혼 후에도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경우, 세대에 포함시켜 심사를 진행합니다.	
	13		부인정	이혼이 확정되어 주민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 시의 세대원으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원하시는 경우 “신규 신청 양식” 에서 다시 신청해 주세요. 또한, 가구원이 1명 감소하면 인정 기준액도 감액됩니다.	
	계좌	14	신청자(지원비 수령인)는 그대로 두고, 입금 계좌만 변경하고 싶다.		“변경 신청 양식” 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변경	15	신청자(지원비 수령인)를 변경하고 싶다.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규 신청 양식” 에서 변경된 계좌 명의자를 신청자로 변경하여 다시 신청해 주세요.